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국고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채권]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6.11- 2012.06.10
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3.26	제34조(투자대상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생략 2. 생략 추 가 3. 법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(이하 “장내파생상품” 이라 한다) 4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5. 법시행령제 268 조제 3 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생략 2. 생략 3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, 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 이라 한다) 4.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(이하 “장내파생상품” 이라 한다) 5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

			6. 법시행령제26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
2012.03.26	제35조(투자한도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</p> <p>1. 생략 2. 생략 추 가</p> <p>3.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.</p> <p>②제 1항제 1호 내지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생략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항제 1호내지 제 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</p> <p>1. 생략 2. 생략 3. 집합투자증권등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. 4.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.</p> <p>②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생략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2012.03.26	제36조(운용제한)	<p>① 생략 ②제 35 조 및 이 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5 조제 1항제 3호, 이 조 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 ③생략</p>	<p>① 생략 ②제 35 조 및 이 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5 조제 1항제 4호, 이 조 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 ③생략</p>

		신 설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투자대상 추가 등)
--	--	-----	-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22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